

<2022년 6월 18일 지방직 7급 공무원 지방세법>

우선 2022년 지방직 9급 시험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올해는 평소보다 잘 나오지 않는 지엽적인 세율부분이 2문제,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어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꽤 높았다고 보입니다.

①	①	④	④	①	③	②	②	④	③
①	①	②	③	③	①	③	④	①	③

1번 ①

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이 되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.

2번

① 납세자가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(物納)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결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로서 그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.

3번 ④

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.

4번 ④

- ① 토지 및 건축물: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
- ② 토지 및 건축물: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
- ③ 주택: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

5번 ①

제2차 납세의무자에 불복청구인으로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.

6번 ③

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·수익·재산·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.

7번 ②

- ① 지하수의 납세지: 채수공(採水孔)의 소재지
-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: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(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) 및 선박(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)
- ④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8번

ㄴ.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,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그 압류 재산을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.

ㄷ.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.

9번

④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해당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제53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54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·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0번

③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성립시기: 납기가 있는 달의 1일

11번

② 광업권·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부과대상인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.
③ 법인의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도 등록면허세의 부과대상인 등록에 포함한다.
④ 변경면허를 받는 자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
12번

②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내국법인으로 본다.
③ 연결납세방식은 외국법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④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수적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.

13번

② 여행자의 반입되는 담배로서 궤련 200개비를 한도로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.

14번

③ 지방소비세의 부과·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. 이 경우 제68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.

15번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를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(교부청구는 제외한다)을 할 수 없다.

16번

②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 건조, 종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(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)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.
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·농어촌버스운송사업·마을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
④ 장애인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.

17번

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. 표준세율로 가감할 수 없다.

18번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1항(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)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
- ② 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.
- ③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1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.

19번 ①

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,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.

20번 ③

(다) 비영업용 대형일반버스: 115,000원

(가) 고속버스: 100,000원

(나) 대형전세버스: 70,000원

(라) 비영업용 소형일반버스: 65,000원